

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기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3월 8일

- 회부일자 : 1996년 3월 8일

3. 개정이유

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(대통령령 제 14744호 - '95. 8. 4)에 따라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의원수를 증원하여 현행 제도의 기능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 이내 → 120인 이내로 개정

나.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→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

다.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를
→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

5. 검토의견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하고, 심의대상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직제 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인바,

-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하고
-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
-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을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